

『2026년 드론산업 육성 지원사업』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 모집공고

경기도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드론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조기/안정적 시장진출을 위한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14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드론 기업의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한 조기/안정적 시장진출 및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2. 개요

- 사업명 : 『2026년 드론산업 육성지원』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 주관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접수기간 : '26. 5. 14(목) ~ 6. 5(금)
- 사업기간 : 협약일 ~ 4개월 내외
- 지원분야 : 국내외 지식재산 출원, 인증, 시험분석, 홍보/마케팅, 실증 등
최대 지원가능한도 내 신청분야 자율구성
('3. 지원분야 및 절차' 참조)
- 사업예산 : 기업당 정부지원금 500만원(VAT제외),
기업현금부담금 100만원 이상(정부지원금 기준 20% 이상)
-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내 드론관련 중소기업

※ 본사, 지점,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기업

- 본 사업 선정 이후, 경기도 관외의 지자체로 이전 시, 선정을 취소함

3.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탐지 및 인식) 위치, 운동상태와 지형, 장애물을 탐지해 인식하는 관련 기술
- (자율지능) 인식된 상황/환경을 바탕으로 조정제어, 임무수행, 자기상태 진단 기술
- (통신 및 네트워크) 전파, 광,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 기술, 관련 보완기술
-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조종, 훈련 등 활용을 위한 장비 관련 기술
- (동력원 및 이동) 이동과 운용에 필요한 고성능, 고효율 동력원 등 관련기술
- (시스템 통합) 드론 통합에 필요한 HW/SW, 체계, 설계 기술
- 기타 무인이동체 또는 드론관련 기술에 적용 가능한 기술

□ 지원내용

분야	대분류	소분류	지원 한도 (1건당)
지식재산권	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2,000천원
	해외	PCT/디자인/상표 출원	3,000천원
인증· 시험분석	국내인증	제품 인증 또는 시험분석	5,000천원
		경영 인증	5,000천원
		품질 검증	3,000천원
	해외인증	해외 인증	5,000천원
마케팅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부스설치 및 부대장치 임차비용	5,000천원
	홍보물 제작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제작 (국문, 영문 등), 홍보영상	2,000천원
	통·번역비	전시회 참가, 카달로그 제작에 필요한 통·번역비	1,000천원
	조달등록	판로개척을 위한 조달등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컨설팅 및 비용 지원	5,000천원
	시장출시	디자인개발 및 금형/구조설계, 기술영상(3D) 제작	5,000천원

시험비행 (실증)	드론 시험비행	지원항목	지원범위	3,000천원
		시설 임차료	시험비행을 위한 시설임차료 ※ 임차료 산정기준과 신청절차, 세금계산서(영수) 발행 등의 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시설) 또는 대학교에 한하여 인정(시설기관을 통한 임차 지원 불가)	
		드론 보험료	드론보험(영업배상책임) 가입에 따른 보험료	
기타	선정심사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여부 결정			5,000천원

4. 지원절차 및 지원금 교부

□ 지원절차

구분	일정	내용	주관
사업공고 및 접수	5. 14(목) ~ 6. 5(금)	사업공고 및 온라인 접수 (http://pms.gtp.or.kr)	신청기업→경기TP
↓			
서류검토	접수일 ~ 6. 10(수)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경기TP
↓			
선정평가	6월 중	- 1차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확인) - 2차 선정평가 (외부전문위원 구성)	경기TP
↓			
선정기업 과제 승인 통보	6월 말	선정과제 승인 통보	경기TP→선정기업
↓			
과제 추진	6월 말	선정기업은 승인된 신청내역에 대한 과제추진	선정기업
↓			
완료보고서 제출·접수	과제 완료 후 상시	완료과제에 대한 결과(증빙)서류 상시 접수	선정기업→경기TP
↓			
사업비 정산 및 교부	서류접수 후 2주 이내	결과서류 검토 및 사업비 정산을 통한 지원금 교부	경기TP→선정기업

□ 지원금 교부 절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이후 과제 승인 통보
- 승인된 신청내역에 따라 선정기업은 과제를 추진 후 사업비 사용내역 및 정산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정산 검토 후 신청기업의 계좌로 지원금 교부

4.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지원의 적합성(25)	- 지원의 필요성 - 사업추진 의지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35)	- 최종목표의 명확성 - 수행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20)	- 일정별 추진(제작)내용의 합리성(기간 등 고려)
파급효과(20)	-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 계획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3인 내외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 선정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진행
- 선정기준
 - 평균 6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지원의 적합성,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사업비 조정결과 잔여예산 발생시, 기선정 기업의 지원 포기 또는 부적격 사유 발생시 별도의 선정심사 없이 60점 이상의 차순위 예비 기업을 선정

5.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접수

- 접수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pms.gtp.or.kr>)
 - ① 경기테크노파크 검색 → 사업공고 클릭 → 공고문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 ②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해야 함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필수	제공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필수	홈택스
2-1	공장등록증명	해당시	정부24
3	국세완납증명	필수	홈택스
4	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수	정부24
5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6	서약서	필수	제공서식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필수	제공서식
8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제공서식
9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약약서	필수	제공서식
10	최근2개년 재무제표(2024년, 2025년)	필수	홈택스 등
11	최근 2년 이내 드론 사업(기술보유) 관련 매출 증빙	필수	특허증,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소속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재)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최경관 과장	kkchoi@gtp.or.kr	031-500-3050

6.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드론 운용 및 제작관련 직접 기술이 없이 유통 또는 판매(도·소매)만 하는 기업
- 2026년에 경기도외 타시·도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지원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기업)
※ 단, 본사, 지점,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이 경기도 소재 시 선정 유효
- 동일한 과제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공고기간 동안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기업
- 과제 신청일 이후 사업기간 중 부도, 법정관리, 휴·폐업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기업
-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선정 이후 과제추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신청기업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행정사항

- 신청인(신청기업)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의거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적용법률
 - ↳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참고]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참고

경기도 고시 제2026-8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8.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3.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
가.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유예사업
 - 1) (계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 5) (시·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붙임 1)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
다.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협약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4)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
 - 단,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다.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
-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
-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도·시군 조회
-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031-8030-2992)

- 붙임
- 1. (유예대상 목록) 47개 법위반 행위목록
 - 2.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3.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 4. (서식3) 이의 및 구제신청서
 - 5. (서식4)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